

항소(상고)포기서

사 건 2000 고단 000호 00

피고인 0 0 0

위 사건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의 20○○. ○. ○.에 선고한 징역 ○년에 집행유예 ○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(상고)권을 전부 포기합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인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기관	원심법원{※아래(1)참조}(형사소송법 353조)		
포기권자	※ 아래(2)참조	관 할	원심법원
제출부수	포기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349~356조
법정대리인의 동 의	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. 다만,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 는 예외(형사소송법 350조)		
상소포기 방 식	서면으로 포기해야함. 단,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(형사소송법 352조1항)		
상소포기 효 과	재상소의 금지(형사소송법 354조)		

※ (1) 제출기관(형사소송법 355, 344조)

- 1.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
- 2.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

※ (2) 포기권자(형사소송법 349조)

- 1. 검사
- 2. 피고인
- 3. 항고권자(형사소송법 349, 339조) 단,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 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(형사소송법 349조)